

우주개발사업의 지속발전을 위한 국내입법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이 강 빈 **

목 차

- I. 서 론
- II. 우리나라의 우주개발 현황
- III. 우주개발 관련 국제조약
- IV. 우주개발 관련 주요국의 국내입법례
- V. 우주개발 관련 우리나라 국내입법의 내용 및 개선
방향
- VI. 결 론

* 이 논문은 2009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 강화사업비)으로 한국 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KRF-2009-327-B00767).
** 상지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I. 서론

현재 세계 각국은 우주개발과 자국민의 편익제공 및 자국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과학위성, 통신방송위성, 우주탐사용위성, 다목적위성, 유인 우주왕복선, 국제우주정거장 등을 우주발사체를 이용하여 우주공간에 다수 발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2년 이후 한국과학기술원 인공위성연구센터에서 개발한 소형 과학위성 우리별 1호, 2호, 3호가 외국에서 발사되었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이 개발한 과학기술위성 1호가 러시아에서 발사되었고, 한국통신이 주관하여 통신방송위성 무궁화 1호, 2호, 3호, 4호, 5호가 외국에서 발사되었으며,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주도로 개발한 다목적실용위성 아리랑 1호, 2호가 외국에서 발사되었다.

한편 2008년에 우리나라의 첫 우주인 이소연 박사가 러시아 유인우주선 소유즈호에 탑승하여 국제우주정거장 러시아 모듈에서 과학실험 등 우주활동을 수행하였다. 또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전남 고흥군 봉래면 외나로도에 착공한 나로우주센터가 2009년 6월 준공되어 우리나라는 세계 13번째의 우주센터 보유국이 되었으며, 2009년 8월에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발사체 나로호(KSLV-I)에 의해 과학위성 2호가 이곳에서 우리의 자력으로 발사되었다.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과 우주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UN의 결의에 따라 현재 5개의 국제조약 즉 1967년의 우주조약, 1968년의 우주구조반환협정, 1972년의 우주손해책임조약, 1976년의 우주물체등록조약 및 1979년의 달 조약 등이 채택되었으며, 우리나라는 달 조약을 제외한 상기 4개 국제조약에 가입되어 있다.

한편 세계 각국들은 상기 우주개발 관련 국제조약의 준수 및 자국의 우주산업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한 규정, 우주물체의 등록 및 등록대장의 비치, 우주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우주비행사의 구조, 귀환 및 추락된 우주물체의 반환 등에 관하여 자국의 실정에 맞추어 국내우주법을 제정하여

시행해 오고 있다.

주요국의 우주개발 관련 국내입법례를 살펴보면, 미국의 1958년 국가항공우주법 및 1998년 상업우주법, 영국의 1986년 우주법, 프랑스의 1961년 국립우주연구센터 설립에 관한 법, 캐나다의 1990년 우주청법, 2008년 우주기본법, 러시아의 1993년 우주활동에 관한 러시아 연방법 등이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현재 우주개발 관련 주요 국내입법으로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우주개발진흥법 및 우주손해배상법 등이 제정되어 있다.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은 항공우주산업을 합리적으로 지원 육성하고 항공우주과학기술을 효율적으로 연구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1987년 12월 4일 제정되어 그 후 수차례 개정되어 시행해 오고 있다. 우주개발진흥법은 우주개발을 체계적으로 진흥하고 우주물체를 효율적으로 이용 및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 5월 31일 제정되어 시행해 오고 있다. 우주손해배상법은 우주손해가 발생한 경우의 손해배상범위와 책임한계 등을 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8년 2월 29일 제정되어 시행해 오고 있다.

이제 본격적인 우주개발시대를 맞이하여 2015년경에 약 4,5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세계 우주산업시장을 놓고 세계 각국은 각축전을 벌이고 있으며, 우주산업이 미래의 국가 핵심사업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우주개발에 있어서 기술적 경쟁력을 갖추어 우주개발시대의 선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우리나라 우주개발사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제도에 관한 국내입법상의 미비점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본 연구의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본 연구의 내용은 우리나라의 우주개발 현황 및 우주산업 현황을 서술하고, 우주개발 관련 국제조약으로 우주조약, 우주구조반환협정, 우주손해책임조약, 우주물체등록조약, 달 조약 등에 관하여 고찰하고, 우주개발 관련 주요국의 국내 입법례로서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일본, 러시아 등의 입법례를 고찰하고, 우주개발 관련 우리나라 국내입법으로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우주개발진흥법, 우주손해배상법 등의 주요내용 및 개선방향 그

리고 상업우주 운송산업 육성을 위한 법령의 정비 필요성에 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본 연구와 관련된 주요 선행 연구논문들을 살펴보면, 김두환(2005)의 연구¹⁾에서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일본, 러시아, 오스트레일리아 등의 우주관계 국내입법, 우리나라 우주개발진흥법의 주요내용 및 향후 개선과제 등에 관하여 서술하고 있다. 김선이(2007)의 연구²⁾에서 우리나라 우주손해배상법의 제정경위, 우주손해배상법의 주요내용, 우주사고에 대한 손해배상보험, 각국 우주사고 손해배상 등에 관하여 서술하고 있다. 본 연구논문은 우주개발 관련 주요국의 국내입법례 및 우주국제조약 모두와의 비교 고찰을 통하여 우리나라 국내우주입법 모두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점에서 기존 연구논문과 차별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II. 우리나라의 우주개발 현황

1. 우주개발 현황

(1)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 수립

정부는 우주개발진흥법 제5조³⁾에 따라 우주개발의 진흥과 우주물체의

-
- 1) 김두환, “세계 각국의 우주관계 입법례와 우리나라 우주개발진흥법의 주요내용 및 앞으로의 과제”, 『항공우주법학회지』 제20권 제1호, 한국항공우주법학회, 2005. 6.
 - 2) 김선이, “우주손해배상법에 관한 약간의 고찰”, 『항공우주법학회지』 제22권 제2호, 한국항공우주법학회, 2007. 12.
 - 3) 우주개발진흥법 제5조 제1항 : 정부는 우주개발의 진흥과 우주물체의 이용·관리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을 세워야 한다. 1. 우주개발 정책의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우주개발 추진체계 및 전략에 관한 사항 3. 우주개발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4. 우주개발에 필요한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5. 우주개발에 필요한 소요재원 조달 및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6. 우주개발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7. 우주개발의 활성화를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8. 우주개발사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9. 우주물체에 이용·관리에 관한 사항 10. 위성정보 등 우주개발 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11. 그밖에 우주개발 진흥과 우주물체의 이용·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이용·관리등을 위하여 우주개발기본계획을 세워야 한다.

1996년 4월 최초로 종합과학기술위원회에서 최종심의·확정한 ‘우주개발중장기기본계획’(1996년~2015년)을 수립하였는 바,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은 2015년까지 총 19기의 위성체 개발, 과학로켓 및 우주발사체 개발 등이다. 그 후 우주개발중장기기본계획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최종심의·확정한 3차의 수정이 있었는 바, 1998년 11월 1차 수정 주요내용은 독자위성 발사시기의 2005년으로 변경이고, 2000년 12월 2차 수정 주요내용은 2015년까지 총 20기의 인공위성 개발, 단계별 우주발사체 개발 및 우주센터 건설, 우주연구개발 및 국제협력 추진계획 수립 등이며, 2005년 5월 3차 수정 주요내용은 2010년까지 총 13기의 인공위성 개발, 위성 개발일정 조정 등이다.

그 후 2005년 5월 국가우주개발 진흥을 위해 제정된 ‘우주개발진흥법’ 제 5조에 따라 2007년 6월 국가우주위원회에서 기존 ‘우주개발중장기기본계획’을 수정·보완한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을 심의·확정 하였는 바, 추진 전략은 ① 우주개발사업의 진흥시책 강화, ② 우주개발 결과의 활용촉진, ③ 우주개발 기반의 확충, ④ 우주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확충, ⑤ 우주개발 선진화를 위한 국제협력 확대, ⑥ 우주물체의 이용·관리체제 장비 등이다.⁴⁾

(2) 우주개발 현황

1) 위성체

우리나라는 1992년 최초의 인공위성 우리별 1호를 발사하였고, 1993년 소형과학위성 우리별 2호 발사, 1995년 KT 통신방송위성 무궁화 1호 발사, 1996년 KT 통신방송위성 무궁화 2호 발사, 1999년 소형과학위성 우리별 3호 발사, KT 통신방송위성 무궁화 3호 발사, 실용급 위성 다목적실용위성 1호를 발사하였다. 2010년 통신해양기상위성 및 다목적실용위성 5호(SAR)를 발사할 예정이며, 2011년 다목적실용위성 3호 및 과학기술위성 3호 발

4) 과학기술부, 제1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 2007. 6.

사예정, 2013년 다목적실용위성 3A호 발사예정, 2015년 다목적실용위성 6호 발사예정, 2017년 다목적실용위성 7호 및 정지궤도복합위성 발사예정, 2021년 달 탐사선(궤도선)발사예정, 2025년 달 탐사선(착륙선)을 발사할 예정이다.⁵⁾

2) 발사체

우리나라는 1993년 고체 추진체를 사용하는 1단형 과학로켓 KSR-I를 발사하였고, 1998년 2단형 중형 과학로켓 KSR-II 발사, 2002년 액체추진 과학로켓 KSR-III 발사, 2009년 8월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러시아와 국제협력을 통해 100Kg급 소형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진입시키는 소형위성발사체 나로호 KSLV-1을 1차 발사하였다.

2010년 6월 나로우주센터에서 소형위성 발사체 나로호를 2차 발사하였으며, 2019년 한국형 발사체를 발사할 예정이다.⁶⁾

2. 우주산업 동향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우주개발에 착수한 것은 소형과학실험위성 ‘우리별 1호’의 개발을 시작한 1990년대 초부터라고 볼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우주산업의 국제적 위상은 규모는 미미하지만, 정부는 항공우주산업을 21세기 국가 기반산업으로 육성해 나간다는 방침하에 미래 중점 육성산업 중 하나로 지정하고 산업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는 등 많은 투자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2년 과학위성 ‘우리별 1호’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11기의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며 위성 기술은 상당한 수준에 도달하였다.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우주기술은 해상도 1m의 고해상도를 가지는 ‘다목적 실용위성 2호’를 세계에서 7번째로 국내 주도로 개발하는 등 최근 비약적인

5) 한국항공우주연구원, 「2009년 우주산업실태조사 보고서」, 2009. 11, p.27.

6)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전계서, p.27.

발전을 보이고 있다,⁷⁾ 우리나라는 2009년 소형위성발사체 나로호(KSLV-I)를 발사하였으나 나로호는 러시아와 협작을 통해 만들어졌으며 1단 엔진은 러시아에서 도입해 발사체 기술의 자립도는 낮은 편이다. 현재 정부는 2020년경까지 자체 기술로 만든 발사체를 제작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2010년 한국형 발사체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한국형 발사체의 국내개발을 목표로 산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어 우주산업분야의 산업 활성화가 빠르게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⁸⁾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2009년 우주산업실태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2008년 우리나라 우주산업분야 참여기관은 총 99개로 기업 65개, 연구기관 15개, 대학 16개(19개 학과)이며, 전년도와 비교해 우주산업분야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수가 큰폭으로 증가하였고, 이러한 현상은 정부의 우주산업 활성화 정책을 통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8년 우주산업 시장규모는 기업체 매출, 연구기관의 예산, 대학의 연구비를 합하여 1조981억원이며, 이는 전년 대비 13.1% 감소한 수치이지만 참여기업의 수적 증가를 고려해 보면 우주산업 시장규모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기관별로 보면 기업매출은 8,644억원, 연구기관의 예산은 2,243억원, 대학의 연구비는 94억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주산업분야별 규모는 기업은 우주활용서비스가 72.1%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연구기관과 대학은 위성체, 발사체, 지상장비와 같은 우주기기 제작이 각각 87.2%, 90.7%로 절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우주기기 제작분야의 매출은 2,409억원으로 전년 대비 2배가 증가하였다.

2008년 우주산업분야의 수출은 총 145억원, 수입은 1,126억원으로 981억원의 무역적자가 발생하였다. 전년도에 비해 무역적자 규모가 증가한 것은 세계적인 경제악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특히 전년도 수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던 위성휴대폰 수출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7)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전계서, p.25.

8)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전계서, p.26.

2008년 우주산업분야의 총 투자액은 722억원으로 전체의 71.6%가 R&D 분야에 투자되었고, 설비투자는 25.6%로 나타났다. 기관별로는 기업은 설비투자에, 연구기관은 R&D 분야에 상대적으로 많은 투자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⁹⁾

Ⅲ. 우주개발 관련 국제조약

1. 우주조약

(1) 성립경위

1963년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특별위원회”(Committee on the Peaceful Uses of Outer Space: COPUOS)는 “외기권 탐사와 이용에 있어서의 국가활동을 통제하는 법 원칙의 선언”(Declaration of Legal Principles Governing the Activities of States in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의 결의문을 채택하였는데 이 선언이 우주조약의 기초가 되었다.

1967년 우주조약(Outer Space Treaty)은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우주의 탐사와 이용에 있어서의 국가 활동을 통제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Treaty on Principles Governing the Activities of States in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 including the Moon and Other Celestial Bodies)을 말하며, 우주에 관한 기본원칙으로서 설정되었다. 이 조약은 1966년 12월 19일 UN총회에서 채택되고 1967년 10월 10일 발효되었다. 우리나라는 1967년 1월 27일 서명하여 동년 10월 13일 조약 제1262호 공포·발효되었다.¹⁰⁾ 본 조약은 전문과 17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9)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전게서, pp.6-7.

10) 한국항공우주법학회, “항공운송 및 우주개발 관련 국제조약 및 외국 입법례 분석과 우리나라 법제의 개선과제”, 『2007년도 법무부 연구용역 과제 보고서』, 2007. 10. 30. p.104.

(2) 주요내용

1) 우주활동 자유의 원칙

우주조약은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의 탐색과 이용은 그들의 경제적 또는 과학적 발달의 정도에 관계없이 모든 국가의 이익을 위하여 수행되어야 하며 모든 인류의 활동범위이어야 한다.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은 종류의 차별없이 평등의 원칙에 의하여 국제법에 따라 모든 국가가 자유로이 탐색하고 이용하며 천체의 모든 영역에 대한 출입을 개방한다.”라고 규정하여 우주활동 자유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제1조). 여기서 ‘이용’(Use) 이라는 용어는 비배타적인 기초하에 개발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모든 국가는 위 조약의 규정을 따르는 한 우주의 자원을 개발할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¹¹⁾

2) 우주공간 점유금지의 원칙

우주조약은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은 주권의 주장에 의하여 또는 이용과 점유에 의하여 또는 기타 모든 수단에 의한 국가의 전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우주공간 점유금지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제2조). 이 원칙은 달과 다른 천체 뿐 아니라 우주의 모든 부분을 탐사하고 사용할 자유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러나 이용이나 점유에 의한 전유를 금지한다고 하여서 유인 우주시설물까지 건설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고, 우주정거장 아닌 달기지의 건설은 전유행위가 아니라고 한다.¹²⁾

3) 우주의 평화적 이용 원칙

우주조약은 “본 조약의 당사국은 지구주변의 궤도에 핵무기 또는 기타 모든 종류의 대량파괴 무기를 설치하지 않으며, 천체에 이러한 무기를 장치

11) Carl Q. Christol, *The Modern International Law of Outer Space*, Pergamon Press, 1982, pp.39-42; 공군법무실, 「우주법 해설서」, 2008. 10, p.18.

12) James J. Trimble, “The International law of Outer Space and its Effect on Commercial Space Activity”, 11 *Pepperdine Law Review*, 1984, p.531; 공군법무실, 전게서, p.19.

하거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러한 무기를 외기권에 배치하지 아니할 것을 약속한다. 달과 천체는 본 조약의 모든 당사국에 오직 평화적 목적을 위하여만 이용되어야 한다. 천체에 있어서의 군사기지, 군사시설 및 군사요새의 설치, 모든 형태의 무기의 실험 그리고 군사연습의 실시는 금지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우주의 평화적 이용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제4조).

제4조 전단의 규정에 의하면 우주에서 핵무기 또는 여타 대량 파괴의 무기(일반적으로 원자탄, 세균 및 화학무기들)를 일반적으로 금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제법 학자들은 제4조의 범위가 대량파괴의 무기만 언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우주에서 재래식 무기의 사용을 암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라는 견해이다.¹³⁾

4) 우주비행사의 구조

우주조약에 의하면 “본 조약의 당사국은 우주인을 외기권에 있어서의 인류의 사절로 간주하며 사고나 조난의 경우 또는 다른 당사국의 영역이나 공해상에 비상착륙한 경우에는 그들에게 모든 가능한 원조를 제공하여야 한다. 우주인이 이러한 착륙을 한 경우에는 그들은 그들의 우주선의 등록국에 안전하고도 신속하게 송환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5조). 한편 이러한 우주비행사의 구조 문제를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1968년 “우주비행사의 구조, 송환 및 우주에 발사된 물체의 반환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he Rescue Astronauts, the Return of Astronauts, and Return of Objects Launched into Outer Space)이 체결되었으며, 일명 ‘구조협정’(Rescue and Return Agreement)이라고 부른다.

5) 우주활동에 대한 국가의 국제책임 부담원칙

우주조약에 의하면 “본 조약의 당사국은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에 있어서 그 활동을 정부기관이 행한 경우나 비정부 주체가 행한 경우를

13) 박원화, 「우주법」, 명지출판사, 2009, p.91.

막론하고, 국가활동에 관하여 그리고 본 조약에서 규정한 조항에 따라서 국가활동을 보증함에 관하여 국제적 책임을 져야한다.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에 있어서의 비정부 주체의 활동은 본 조약의 관계 당사국에 의한 인증과 지속적인 감독을 요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제6조).

여기서 국제기구란 국가가 회원국으로 있는 정부간 국제기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만일 정부간 국제기구가 아닌 기구에 의한 우주활동의 경우는 관련국가의 허가와 통제를 받아야 하며 이러한 활동으로 인한 손해도 관련국가가 배상하여야 한다.¹⁴⁾

또한 동 조약에 의하면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에 물체를 발사하거나 또는 그 물체를 발사하여 궤도에 진입케 한 본 조약의 각 당사국과 그 영역 또는 시설로부터 물체를 발사한 각 당사국은 지상, 공간 또는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에 있는 이러한 물체 또는 동 물체의 구성부분에 의하여 본 조약의 다른 당사국 또는 그 자연인 또는 법인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 국제적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7조). 한편 이러한 우주조약상의 국제책임 원칙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1972년 “우주물체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국제책임에 관한 조약”(Convention on International Liability for Damage Caused by Space Objects)이 체결되었으며, 일명 ‘책임조약’(Liability Convention)이라고 부른다.

6) 우주물체의 등록과 관할권

우주조약에 의하면 “외기권에 발사된 물체의 등록국인 본 조약의 당사국은 동 물체가 외기권 또는 천체에 있는 동안, 동 물체 및 물체의 인원에 대한 관할권 및 통제권을 보유한다. 천체에 착륙 또는 건설된 물체와 그 물체의 구성부분을 포함한 외기권에 발사된 물체의 소유권은 동 물체가 외기권에 있거나 천체에 있거나 또는 지구에 귀환하였거나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8조).

여기서 등록국가는 선박의 국적국가와 그 지위가 비슷하다. 이로써 선박

14) 김한택, 「항공우주법」, 지인북스, 2007, p.100.

에는 선박의 국적국가, 항공기에는 항공기의 등록국가, 우주선에는 우주선의 등록국가가 관할권을 가지게 된 것이다.¹⁵⁾ 한편 이러한 우주조약상의 우주물체의 등록과 관할권 문제를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1974년 “외기권에 발사된 물체의 등록에 관한 조약”(Convention on Registration of Objects Launched into Outer Space)¹⁶⁾이 체결되었으며, 일명 ‘등록협약’(Registration Convention)이라고 부른다.

(3) 우주조약의 주요 쟁점

우주조약은 외기권의 정의, 국제적 책임원칙의 이행, 천체의 탐사와 같은 특정문제들에 대하여 협정에 의하여 신속하게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주조약이 우주비행사의 구조 및 반환 그리고 우주물체의 귀환에 관한 특별협정의 체결에 준 자극은 하나의 격려지침이 되고 있다. 아직 장기적으로, 만약 외기권 및 천체에 관하여 국제법 규칙이 정말로 설정된다면, 그것은 본질적 규칙 뿐만 아니라 분쟁해결절차 그리고 협력과 필요한 경우 감독의 제도에 관심이 주어져야 한다.¹⁶⁾ 우주구조상 많은 일반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규정들에 관한 후속적인 국제우주법 법률문서들로서 우주구조반환협정, 우주손해책임조약, 우주물체등록조약, 달조약이 등장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주활동에서의 비정부주체의 참여에 관한 우주조약 제6조 및 우주의 환경보호에 관한 동조약 제9조의 규정에 관하여는 후속적인 국제우주법 법률문서들이 나오고 있지 않는 바, 조속히 이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¹⁷⁾

2. 우주구조반환 협정

(1) 성립경위

1967년 12월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특별위원회(COPUOS) 법률

15) Bin Cheng, *Studies in International Space Law*, Clarendon Press Oxford, 2004, p.73.

16) Bin Cheng, *op. cit.*, p.264

17) 문준조·김선이, 「현대우주법론」, 한국법제연구원, 2009, pp.122-123.

소위원회의 특별회의에서 우주비행사의 송환 및 우주물체의 반환에 관한 조약안의 최종안이 합의되어 UN에서 결의 2345(XXIII)로서 채택되었다. 그후 1968년 4월 22일 “우주비행사의 구조, 송환 및 우주에 발사된 물체의 반환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he Rescue Astronauts, the Return of Astronauts and Return of Objects Launched into Outer Space)이 서명되고 동년 12월 3일 발효되었으며, 일명 ‘우주구조반환협정’(Rescue and Return Agreement)이라고 부른다. 우리나라는 1968년 5월 8일 워싱턴에서 서명하여 1969년 4월 4일 조약 제296호로 공포·발효되었다.¹⁸⁾ 본 협정은 전문과 1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주요내용

1) 체약국의 우주비행사 조난 통보의무

우주구조반환협정에 의하면 “우주선원이 사고를 당하였거나 또는 조난 상태를 당하고 있거나 또는 체약국의 관할하에 있는 영역 또는 공해, 또는 어느 국가 관할권에도 속하지 않는 기타 장소에 비상 또는 불의의 착륙을 하였다는 정보를 입수하거나 또는 이러한 사실을 발견한 각 체약국은 즉각, (a) 발사당국에 통보하거나, 또는 발사당국을 확인할 수 없어 동 당국과 교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각 동 체약국의 처분 하에 있는 모든 적합한 통신 수단으로 공개 발표를 하여야 하며, 또한 (b)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1조).

2) 체약국의 조난 우주비행사 구조 및 원조의무

우주구조반환협정에 의하면 “우주선원이 사고, 조난, 비상 또는 불의의 착륙으로 인하여, 체약국의 관할권 하에 있는 영역에 착륙한 경우, 동 체약국은 즉시 동 우주선원을 구조하기 위한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또한 이들에 대하여 모든 필요한 원조를 제공하여야 한다. 동 체약국은 동국이 취하고 있는 조치 및 동 조치의 진전에 관하여 발사당국 및 국제연합

18) 한국항공우주법학회, 전계 보고서, pp.105-106.

사무총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

이 조항은 1978년 구소련연방(USSR)의 Cosmos 954 위성이 캐나다 영역에 추락한 후에 구소련연방에 의해 원용되었다. 캐나다는 손해의 제한을 기대하여 구소련연방이 탐색 및 구조작업에 참가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거절하였으며, 구소련연방은 손해배상청구액보다 적게 지급하기 위한 논거로서 이 조항을 이용하였다.¹⁹⁾

3) 계약국의 조난 우주비행사 송환의무

우주구조반환협정에 의하면 “우주선원이 사고, 조난, 비상 또는 불의의 착륙으로 인하여, 계약국의 관할권 하에 있는 영역에 착륙하거나, 공해 또는 어느 국가의 관할권에도 속하지 않는 기타 어떤 장소에서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동 우주선원은 안전하고 신속하게 발사당국의 대표에게 인도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4조).

4) 계약국의 낙하 우주물체의 통보, 회수 및 반환의무

우주구조반환협정에 의하면 “① 대기권에 발사된 물체 또는 그 구성부분품이 계약국의 관할권 하에 있는 영역내의 지구상, 공해 또는 어느 국가의 관할권에도 속하지 않는 기타 어떤 장소에 귀환하였다는 정보를 입수하거나 또는 여사한 사실을 발견한 계약국은 발사당국 및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대기권에 발사된 물체 또는 그 구성부분품이 발견된 영역 상에 관할권을 보유하는 각 계약국은 발사당국의 요청에 따라, 그리고 또한 발사당국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동 당국으로 부터의 원조를 받아 동 물체 또는 그 구성부분품을 회수하기 위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발사당국의 영역 한계 외에서 발견된 대기권에 발사된 물체 또는 동 구성부분품은 발사당국의 요청에 따라 발사당국의 대표에게 반환 되거나 또는 동 대표의 처분 하에 보관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5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19) I.H.Ph. Diederiks-Verschoor and V.Kopal, *An Introduction to Space Law*, Kluwer Law International, 2008, p.32.

(3) 우주구조반환협정의 주요 쟁점

우주비행사 및 우주물체의 구조 및 귀환의 요건을 재검토하고 그리고 그의 운영에 있어서 모든 관계자들에게 즉시 더욱 효과적이고 형평적이 될 제도를 만들기 위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원조와 책임 모두에 관한 하나의 통합된 협정의 마련을 위해 언급될 것이 많이 있는 것이다.²⁰⁾

우주구조반환협정이 가지고 있는 가장 두드러진 결함중의 하나는 우주비행사의 구조 및 귀환으로 발생하는 경비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점이다. 그 이유에 대하여 우주비행사는 ‘우주에서 인류의 사절’로 간주되기 때문이라는 견해가 있다. 한편 우주비행사의 구조 및 귀환과는 달리 우주물체의 발견 및 귀환에 관련되는 경비는 발사당국이 전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²¹⁾

3. 우주손해책임조약

(1) 성립경위

1971년 6월 29일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특별위원회(COPUOS) 법률소위원회에서“우주물체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국제책임에 관한 조약”(Convention on International Liability for Damage Casused by Space Objects) 초안이 작성되고, 동년 11월 29일 UN총회 결의 2777(XXVI)에 의하여 채택되어, 1972년 3월 29일 서명되고 동년 9월 1일 발효되었다. 우리나라는 1980년 1월 14일 조약 제702호로 공포·발효되었다.²²⁾ 본 조약은 전문과 28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주요내용

1) 손해의 정의

우주손해책임조약에서 “손해(damage)라 함은 인명의 손실, 인체의 상해

20) Bin Cheng, *op.cit.*, p.285.

21) 문준조·김선이, 전게서, pp.126-127.

22) 한국항공우주법학회, 전계 보고서, p.107.

또는 기타 건강의 손실 또는 국가나 개인의 재산 자연인이나 법인의 재산 또는 정부 간 국제기구의 재산의 손실 또는 손해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1조(a)). 조약에서 의도하는 본조의 손해는 직접적인 손해만을 의미하는 것이고, 간접적인 손해는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것은 명백하다. 예비토의에서 몇몇 대표들은 간접적인 손해는 실무에 있어서 큰 어려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²³⁾

2) 발사국의 절대적 책임

우주손해책임조약에 의하면 “자국의 우주물체가 지구표면에 또는 비행 중에 항공기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지불할 절대적인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 우주물체의 발사국에 절대적인 책임(absolute liability)을 과하고 있는 것은 우주활동이 고도의 위험을 내포하는 ‘초 위험적 행위’로서 손해발생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어렵고 우주활동에 의해 이익을 얻는 발사국이 당해 활동에 관한 위험을 전적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위험책임주의’의 사고로부터 나온 것이다.²⁴⁾

절대책임제도에 의하면, 국가는 여하한 상황 하에서 불가항력(force majeure)의 경우조차도 책임을 져야한다.²⁵⁾ 한편 동 조약에 의하면 “본조 제2항의 규정을 따를 것으로 하여 발사국 측의 절대책임의 면제는 손해를 입히려는 의도 하에 행하여진 청구국 또는 청구국을 대표하는 자연인 및 법인 측의 작위나 부작위 또는 중대한 부주의로 인하여 전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발사국이 입증하는 한도까지 인정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6조). 또한 동 조약에 의하면 “이 협약의 규정은 발사국의 우주물체에 의하여 발생한 (a) 발사국의 국민에 대한 손해, (b) 발사시 또는 발사시 이후 어느 시기로부터 하강할 때까지의 단계에서 그 우주물체의 작동에 참여하는 동안 또는 발사국의 초청을 받아 발사 또는 회수 예정지역의 인접지에 있는 동안의 외국인에 대한 손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규정

23) I.H.Ph.Diederiks-Verschoor and V.Kopal, *op.cit.*, p.139.

24) 홍순길 외 2인, 「신국제항공우주법」, 항공대학교 출판부, 2006, p.279.

25) I.H.Ph. Diederiks-Verschoor and V.Kopal, *op.cit.*, p.37.

하고 있다(제7조).

이는 결과적으로 발사에 참여하고 있는 개인업체가 고용하고 있는 내·외국인에 대한 피해는 동 업체의 등록국법에 따라 해결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발사국은 자국민에 대한 피해를 국내법에 따라 해결하여야 한다. 따라서 책임협약이 보호하는 대상은 외국의 국민과 재산에 대한 피해이다.²⁶⁾

3) 발사국의 과실책임

우주손해책임조약에 의하면 “지구 표면 이외에 영역에서 발사국의 우주물체 또는 동 우주물체상의 인체 또는 재산이 타 발사국의 우주물체에 의하여 손해를 입었을 경우, 후자는 손해가 후자의 과실 또는 후자가 책임져야 할 사람의 과실로 인한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3조).

4) 발사국의 연대책임

우주손해책임조약에 의하면 “① 2개 또는 그 이상의 국가가 공동으로 우주물체를 발사할 때에는 그들은 발사한 손해에 대하여 공동으로 그리고 개별적으로 책임을 진다. ②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지불한 바 있는 발사국은 공동 발사의 타참가국에 대하여 구상권을 보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5조).

5) 발사국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우주손해책임조약에 의하면 “① 손해를 입은 국가 또는 자국의 자연인 또는 법인이 손해를 입은 국가는 발사국에 대하여 그러한 손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손해를 입은 국민의 국적국이 배상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타 국가는 어느 자연인 또는 법인이 자국의 영역내에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발사국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손해의 국적국 또는 손해 발생 지역국이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거나 또는 청구의사를 통고하지 않을 경우, 제3국은 자국의 영주권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발사국에 보상을 청구

26) 박원화, 전계서, p.97.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8조).

동 조약에 의하면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발사국에 제시되어야 한다. 당해 발사국과 외교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 않는 국가는 제3국에 대하여 발사국에 청구하도록 요청하거나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이 협약에 따라 자국의 이익을 대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또는 청구국과 발사국이 공히 국제연합의 회원국일 경우, 청구국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을 통하여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9조).

동 조약에 의하면 “①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는 손해의 발생일 또는 책임져야 할 발사국이 확인한 일자 이후 1년 이내에 발사국에 제시될 수 있다. ② 만일 손해의 발생을 알지 못하거나 또는 책임져야 할 발사국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 전기 사실을 알았던 일자 이후 1년 이내에 청구를 제시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기간은 태만하지 않았다면 알 수 있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날로부터 1년을 어느 경우에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10조).

동 조약에 의하면 “① 이 협약에 의거 발사국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제시는 청구국 또는 청구국이 대표하고 있는 자연인 및 법인이 이용할 수 있는 사전 어떠한 국내적 구제의 완료를 요구하지 않는다. ② 이 협약상의 어떠한 규정도 국가 또는 그 국가가 대표하고 있는 자연인이나 법인이 발사국의 법원 또는 행정재판소 또는 기관에 배상청구를 발사국의 법원 또는 행정재판소 또는 기관에 제기되어 있거나 또는 관련 국가를 기속하고 있는 타 국제협정에 의거 제기되어 있는 동일한 손해에 관하여는 이 협약에 의거 청구를 제시할 권리를 가지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11조).

6) 발사국의 손해배상액

우주손해책임조약에 의하면 “발사국이 이 협약에 의거 책임지고 지불해야 할 손해에 대한 배상은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 예상되는 상태대로 자연인, 법인, 국가 또는 국제기구가 입은 손해가 보상될 수 있도록 국제법 및 정의와 형평의 원칙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12조).

7) 배상청구위원회 설치

우주손해책임조약에 의하면 “청구국이 청구 자료를 제출하였다는 사실을 발사국에게 통고한 일자로부터 1년 이내에 제9조에 규정된 대로 외교적 교섭을 통하여 보상 청구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관련 당사국은 어느 1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청구위원회를 설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14조).

동 조약에 의하면 “청구위원회는 3인으로 구성된다. 청구국과 발사국이 각각 1명씩 임명하며, 의장이 되는 제3의 1인은 당사국에 의하여 공동으로 선정된다. 각 당사국은 청구위원회 설치요구 2개월 이내에 각기 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15조).

동 조약에 의하면 “청구위원회는 배상 청구의 타당성 여부를 결정하고 타당할 경우, 지불하여야 할 배상액을 확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18조).

동 조약에 의하면 “위원회의 결정은 당사국이 동의한 경우 최종적이며 구속력이 있다. 당사국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위원회는 최종적이며 권고적인 판정을 내리되 당사국은 이를 성실히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그 결정 또는 판정에 대하여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위원회가 결정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는 가능한 신속히 그리고 위원회 설치일자로부터 1년 이내에 결정 또는 판정을 내려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19조).

(3) 우주손해책임조약의 주요 쟁점

우주손해책임조약에 있어서 손해배상청구의 해결절차는 순수하게 입법 기술의 관점에서 볼 때, 조약에 규정되어 있는 제도가 가장 효과적인 것은 아닌 것이다.²⁷⁾ 우주손해책임조약의 규정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2가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첫째, 어떠한 자가 조약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가에 관한 제8조 규정의 해석 문제이다. 동 조약 제8조제1항은 손해를 입은 국가 또는 자국의 자연인 또는 법인이 손해를 입은 국가가 손해

27) Bin Cheng, *op.cit.*, p.355.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동 조약 제22조제1항은 국가에 대해 언급된 사항은 우주활동을 수행하는 어느 정부간 국제기구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기구가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손해를 입은 국제기구인가 아니면 그 국제기구가 위치하고 있는 국가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둘째, 배상청구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제14조 규정의 실효성에 관한 문제이다. 동 조약 제14조는 외교적 교섭을 통해 배상청구가 해결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 청구위원회가 구성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동조약 제11조제1항은 발사국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는 청구국이 대표하고 있는 자연인이나 법인이 사전 어떠한 국내적 구제의 완료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두가지 조항은 동 조약 제14조가 제11조를 무력화 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서로 모순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조약 기초자들은 국내적 구제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였다는 점에서 국내적 구제를 선택하도록 기대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동 조약 제19조제1항은 청구위원회의 결정은 당사국이 동의한 경우 최종적이며 구속력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당사국이 동의한 경우’라는 단서를 삭제함으로써 종국적이고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변경하여야 할 것이다.²⁸⁾

4. 우주물체등록조약

(1) 성립경위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특별위원회(COPUOS)에서 1972년 이후 3회기에 걸쳐 “외기권에 발사된 물체의 등록에 관한 조약”(Convention on Registration of Objects Launched into Outer space) 초안을 심의한 결과 1974년 10월 18일 UN총회 제1위원회에서 조약안이 승인되어 동년 11월 12일 UN총회 결의 3235(XXIX)로 채택되었다. 그 후 이 조약은 1975년 1월 14일 서명되어 1976년 9월 15일 발효되었다. 우리나라는 1981년 10월 15일 조약

28) 문준조·김선이, 전제서, pp.144, 145, 166.

제761호로 공포·발효되었다.²⁹⁾ 본 조약은 전문과 12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주요내용

1) 발사국의 우주물체 등록·통보 의무

우주물체등록조약에 의하면 “우주물체가 지구궤도 또는 그 이원에 발사되었을 때, 발사국은 유지하여야 하는 적절한 등록부에 등재함으로써 우주물체를 등록하여야 한다. 각 발사국은 동 등록의 확정을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각 등록의 내용 및 그것이 유지되는 조건은 관련 등록국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

2) 국제연합 사무총장의 등록부 유지

우주물체등록조약에 의하면 “①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제4조에 따라 제공된 정보가 기록되어야 하는 등록부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본 등록부상의 정보에 대한 완전하고도 개방된 접근이 가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3조).

3) 등록국의 우주물체 등록정보 제공의무

우주물체등록조약에 의하면 “각 등록국은 등록부상 등재된 각 우주물체에 관련한 다음 정보 (a) 발사국 및 복수 발사국명 (b) 우주물체의 적절한 기탁자 또는 동 등록번호 (c) 발사일시 및 발사 지역 또는 위치 (d) 다음을 포함한 기본 궤도요소 (i) 노들주기 (ii) 궤도 경사각 (iii) 원지점 (iv) 근지점 (e) 우주물체의 일반적 기능 등을 실행 가능한 한 신속히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4조).

이러한 요건으로부터 발생하는 주요문제는 국가들이 군사목적 또는 그들의 실제적 임무를 위하여 위성을 발사하였다는 사실을 공개하기를 원하지 않는데에 있다. 오직 우주물체의 일반적 목적에 대한 최소의 암시가 요구되

29) 한국항공우주법학회, 전계 보고서, pp.110-111..

는 때조차도 국가들은 흔히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기를 원하지 않는다.³⁰⁾

(3) 우주물체등록조약의 주요 쟁점

우주물체등록조약의 규정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2가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첫째, 발사국의 우체물체 등록의무에 관한 제2조 및 국제연합 사무총장의 중앙 등록부 유지의무에 관한 제3조 규정과 관련하여 미등록 우주물체에 관한 문제이다. 우주물체등록조약은 모든 우주물체를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어느 국가가 미등록 우주물체에 대하여 관할권과 통제권을 가지는가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이것은 등록을 우주물체의 지위 또는 그 운행의 결과를 규율하는데 이용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어떠한 국가에 의한 등록이 우주물체의 국적을 자동적으로 부여하는 것인지도 불확실하다.

둘째, 등록국이 '가능한 한 신속히'(as soon as possible) 우주물체의 등록 정보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있어서 '가능한 신속히'라는 용어의 문제이다. 동 조약 제4조제1항의 규정은 우주물체 발사 후 수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등록을 완료하지 않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즉시'(promptly)라는 용어로 개정하자는 견해도 있다. 한편 현행 규정은 각국이 여러 가지 상황에서 자신의 의사와 재량에 따라 행동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는 바, 이러한 탄력성은 많은 장점이 있으므로 개정이 불필요하다는 견해가 있다.³¹⁾

5. 달 조약

(1) 성립경위

1979년 6월 18일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특별위원회(COPUOS)에서 1972년부터 7년간에 걸쳐 정제되고 있었던 달 조약안의 심의가 급속

30) I.H.Ph. Diederiks-Verschoor and V. Kopal, *op.cit.*, p.45.

31) 문준조·김선이, 전계서, pp.154-155.

히 진행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1973년 7월 3일 달 조약안이 UN 특별정치 위원회에 회부되어 동년 11월 2일 채택되었다. 더욱이 동 위원회의 보고서가 UN 총회에 회부되어 동년 12월 5일 제34회 UN 총회에서 채택되어 동년 12월 18일 각국에 의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되었으며, 1984년 7월 11일 발효되었다.

달 조약(Moon Treaty)의 정식명칭은 “달 기타 천체에 있어 국가 활동을 규제하는 협약”(Agreement Governing Activities of States on the Moon and Other celestial Bodies)이다. 현재 가입국 대부분이 비 우주개발국이고, 미국, 영국, 러시아, 일본 등 선진 우주개발국을 가입하지 않았으며, 우리나라도 아직 가입하지 않고 있다.³²⁾ 달 조약은 전문과 21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주요내용

1) 달의 평화적 이용

달 조약에 의하면 “① 달은 오로지 평화적 목적을 위하여만 모든 체약국들에 의하여 이용하여야만 된다. ② 달에 대한 여하한 무력에 의한 위협, 무력의 행사, 그밖의 여하한 적대행위 또는 적대행위에 의한 위협은 금지된다. ③ 체약국들은 핵무기 또는 어떤 다른 종류의 대량파괴무기를 운반하는 물체를 달이 주회하는 궤도, 또는 달을 주회하는 다른 비행경로로 나르지 않을 것이며 이와같은 무기들을 달 표면상에 또는 달 내부에 배치하거나 사용하여서도 아니된다. ④ 달 표면상에 군사기지, 군사시설 및 방위시설의 설치, 어떤 다른 종류의 무기의 실험 및 군사연습의 실시는 금지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3조).

2) 달의 탐사 및 이용 활동 원칙

달 조약에 의하면, “① 달의 탐사 및 이용은 전 인류의 활동분야이며 모

32) 한국항공우주법학회, 전계 보고서, p.112.

든 국가들의 이익을 위하여 그 경제적 또는 과학적 발전의 정도에 관계없이 수행하여야만 된다. ② 체약국들은 달의 탐사 및 이용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 협력 및 상호원조의 원칙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4조).

3) 환경의 보전조치

달 조약에 의하면 “체약국들은 달의 탐사 및 이용을 함에 있어 달의 환경에 대하여 악화시키게 하거나 또는 환경외의 물질을 가지고 옴으로서 달의 유해한 오염에 의하거나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것을 묻지 않고 달의 환경의 기존균형의 파괴를 방지하는 조치를 취하여야만 된다. 체약국들은 또한 지구외의 물질을 가져오거나 또는 기타방법에 의한 지구의 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하여야만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7조).

4) 달의 탐사 및 이용의 활동

달 조약에 의하면 “① 체약국들은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달의 표면상 또는 달의 표면 하에서나 어떠한 장소에서도 달의 탐사 및 이용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②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하여 체약국들은 특히, (a) 자국의 우주물체를 달에 착륙시키게 하거나 달로부터 우주물체를 발사할 수 있다. (b) 자국의 요원, 우주선, 장비, 시설, 기지 및 설비를 달의 표면상 또는 달의 표면 하에 어떠한 장소에도 배치할 수 가 있으며, 자유롭게 이동하거나 또는 이동할 수 가 있다. ③ 본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지는 체약국들의 활동은 달 표면상에서 다른 체약국들의 활동에 간섭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8조).

5) 달 및 그 천연자원의 인류 공동유산과 개발규제하는 국제적 제도

달 조약에 의하면 “① 달 및 그 천연자원들은 인류의 공동유산이고 이 협약의 규정에서 그리고 본조 제5항의 규정에서도 표현되고 있다. ② 달은 주권의 주장, 사용 또는 점거, 기타 어떠한 수단에 의하여서도 국가의 전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③ 달의 표면 또는 지하이거나 이들의 일부 또는 원

래 있는 천연자원은 어떠한 국가, 정부 간 국제기관, 비정부 간 국제기관, 국가기관, 비정부단체 또는 자연인의 소유로도 귀속되지 않는다. ④ 체약국들은 평등의 기초에 입각하여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국제법 및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달의 탐사 및 이용할 권리를 갖는다. ⑤ 이 협약하의 체약국들은 달의 천연자원의 개발이 실행가능하게 되었을 때에는 적절한 절차를 포함하여 달의 천연자원의 개발을 규제하는 국제적 제도를 설립하는 것을 약속한다. 이 규정은 본 협약 제18조에 따라 이행되어야 한다. ⑥ 본조 제5항에서 기술된 국제적 제도의 설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체약국들은 국제연합 사무총장과 공중 및 국제과학계에 대하여 실행 가능한 최대한도까지 달에서 발견된 모든 천연자원에 관하여 통지하여야만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11조).

달조약 제11조에서 처음으로 나타난 ‘인류의 공동유산’(the common heritage of mankind)이란 용어는 우주조약 제1조의 ‘인류의 활동범위’(the province of mankind)란 용어와 유사한 표현이지만, 그들은 다른 협정, 문맥 및 범위에서 나타나고 있으므로, 다른 법적 해석이 주어져야 한다. ‘인류의 활동범위’의 법적 본질은 여하한 국가들의 차별없이 외기권의 탐사 및 이용에 있어서 국제적 협력, 그리고 다른 국가들의 이익을 이용에 있어서 국제적 협력, 그리고 다른 국가들의 이익을 고려할 의무이다. 한편 ‘인류의 공동유산’ 용어의 영향은 달의 천연자원의 탐사에 더욱 멀리까지 미치지만 대부분은 관련이 되어 있다.³³⁾

(3) 달 조약의 주요 쟁점

달 조약의 규정으로부터 제기되는 문제는 달 및 그 천연자원의 개발과 모라토리움(moratorium:유예)의 부과여부에 관한 점이다. 달 조약 제11조제1항은 달 및 그 천연자원들은 인류의 공동유산 이라고 선언하고 있으나, 이 개념의 실질적 내용이 무엇인가에 관하여 협약 자체가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

33) I.H.Ph.Diederiks-Verschoor and V.Kopal, *op.cit.*, p.50

한편 동 조약 제11조제8항에서 달의 천연자원에 관한 모든 활동은 설립 되어져야만 할 국제적인 제도의 목적에 적합한 방법으로 수행되어야만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달 조약상 모라토리움이 어느 기간에 걸쳐 어떤 범위까지 부과되어야만 하는 것에 대하여 특히 문제가 되고 있다.

이 문제에 관하여 국제적인 제도가 설립될 때까지의 사이에 달의 천연자원 개발에 어떠한 모라토리움도 부과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는 반면에, 이를 부정하는 견해도 있다. 일반적으로 개발이 실행가능하지 않은 단계에서 실험·시굴 등의 활동에 관한 모라토리움은 부과되지 아니하는 반면에, 개발이 실행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국제적인 제도가 설립되어지지 아니하였을 때의 개발에는 모라토리움이 부과되지 아니한다고 생각된다. 그 이유로는 달 조약 자체에 모라토리움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인 것이다.³⁴⁾

IV. 우주개발 관련 주요국의 국내입법례

1. 미국

미국 ‘국가항공우주법’(National Aeronautic and Space Act of 1958)은 지구의 대기권 안에서 또는 밖에서 비행의 문제들의 조사 및 기타 목적을 규정하기 위한 법률로서, 제1편 법률약칭, 정책선언 및 정의(법률약칭, 정책 및 목적의 선언), 제2편 항공우주활동의 조정(국가항공우주회의, 국가항공우주국(NASA), 국가항공우주국의 기능, 국제협력, 의회보고, 잉여토지의 처분), 제3편 잡칙(국가항공자문위원회, 관련기능의 이전, 정보접근, 안전, 발명의 재산권, 기여수상, 일정한 위법행위 및 과실 소송의 방어, 보험 및 보상, 실험우주선, 충당, 우주국의 이름 및 머리글자의 오용, 소모 발사수송

34) 한국항공우주법학회, 전계 보고서, pp.116-117; Bin Cheng, *op.cit.*, pp.374-375.

단에 관한 계약), 제4편 상층대기권 조사(목적, 정의, 권한을 부여받은 계획, 국제협력)등을 규정하고 있다.³⁵⁾

미국 ‘상업우주법’(Commercial Space Act of 1998)은 미국 상업우주산업의 개발을 장려하고 기타 목적을 위한 법률로서, 제1조 법률약칭, 목차, 제2조 정의, 제1편 상업우주 기회의 촉진(우주정거장의 상업화, 상업우주발사 개정, 발사 바우처 시범계획, 미국 지구위치추적시스템 표준의 촉진, 우주과학데이터의 취득, 상업우주센터의 관리, 지구과학데이터의 출처), 제2편 연방우주수송서비스의 취득(상업우주수송서비스의 구매법 개정, 셔틀(shuttle) 사유화, 잉여 대륙간탄도탄의 이용, 국가발사능력 연구)등을 규정하고 있다.³⁶⁾

미국 ‘상업우주발사법’(Commercial Space Launch Act of 1984, 개정 1990)의 주된 내용은 ① 적용범위, ② 일반적 책임 ③ 발사에 관한 면허요건, ④ 행정 및 재판상의 심사, ⑤ 면허된 행위의 감시, ⑥ 정부자산의 사용, ⑦ 책임보험 ⑧ 다른 법률 및 국제책임과의 관계 등을 규정하고 있다.

미국에는 상공우주관련 입법이외에 ① ‘우주상업화촉진법’(Space Commercialization Promotion Act of 1996), ② ‘상업우주경쟁법’(Commercial Space Competitiveness Act of 1999), ③ ‘통신위성경쟁 및 민영화법’(Communications Satellite Competition and Privatization Act of 1998), ④ ‘우주수송서비스구매법’(Space Transportation Service Purchase Act of 1998), ⑤ ‘상업우주수송경쟁법’(Commercial Space Transportation Competitiveness Act of 1999), ⑥ ‘상업우주수송비용절감법’(Commercial Space Transportation Cost Reduction Act of 1999), ⑦ ‘원격탐사용법’(Remote Sensing Application Act of 2002), ⑧ ‘우주탐사법’(Space Exploration Act of 2002) 등이 있다.

35) 한국항공우주법학회, 전계 보고서, pp.117-118.

36) 한국항공우주법학회, 전계 보고서, pp.118-119.

2. 영국

영국 ‘우주법’(Outer Space Act of 1986)은 우주물체의 발진 및 운항과 우주공간에서 본국 관계인들이 행하는 행위가 영국의 국제적 의무 준수를 확립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제1장 법령의 적용(우주물체의 발사 또는 구입, 운영, 우주공간에서의 활동과 영국시민 또는 법인), 제2장 우주활동의 허가(신청, 면허, 국제적 의무의 이행, 정보제공, 검사, 계속적 감독, 면허취득자의 배상책임보험), 제3장 기타 관리사항(우주물체의 등록), 제4장 일반 등을 규정하고 있다.

3. 프랑스

프랑스 ‘국립우주센터 설립법’(Instituant un Center National d’Etudes Spatiales, 1961)은 ① 국립우주센터 산하에 과학기술 공공부설기관 설립, ② 국립우주센터의 임무내용, ③ 국립우주센터의 자체 재정운영과 지체 회계결산, ④ 국립우주센터의 재정지원, ⑤ 국립우주연구센터 활동보고서의 매년 의회 제출 등을 규정하고 있다.

4. 캐나다

캐나다 ‘우주청법’(Canadian Space Agency Act of 1990)은 캐나다 우주청을 설립하고 우주관련 기타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법률로서, ① 법률약칭, ② 해석, ③ 우주청의 설립, ④ 목적 및 기능, ⑤ 장관의 권한, 의무 및 기능, ⑥ 우주청의 조직, ⑦ 자문위원회, ⑧ 연례보고서, ⑨ 후속규정, ⑩ 경과규정, ⑪ 발효 등을 규정하고 있다.

5. 일본

일본의 우주개발위원회설치법(1968)은 우주의 개발에 관한 국가정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과 그의 민주적인 운영에 자문하기 위하여 총리부에 우주개발위원회를 설치하는 법률로서, ① 목적 및 설치, ② 관장사무, ③ 의견의 존중, ④ 자료제출의 요구 등, ⑤ 조직, ⑥ 위원장, ⑦ 위원, ⑧ 회의, ⑨ 위원의 직무, ⑩ 참여 및 전문위원, ⑪ 정령에 위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일본 ‘독립행정법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법’(2003)은 종전의 우주개발사업단, 우주과학연구소 및 항공우주기술연구소 등 3개 기관을 통합하여 새로운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를 설립하는 법률로서, 제1장 총칙(제1조-제8조), 제2장 임원 및 직원(제9조-제17조), 제3장 업무 등(제18조-제23조), 제4장 잡칙(제24조-제29조), 제5장 벌칙(제30조-제31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일본 ‘우주기본법’(2008)은 일본에 있어 우주개발 및 이용에 관한 기본적인 틀을 설정한 법률로서, 주요내용은 ① 우주개발이용은 일본의 평화주의 이념을 준수한다(제2조) ② 국가안전보장에 우주개발이용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한다(제14조). ③국가 및 민간우주산업의 기술력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한다(제16조). ④ 우주정책의 구체적 목표나 달성기간을 정한 기본계획을 책정한다(제24조). ⑤ 우주개발이용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우주개발전략본부를 내각에 설치한다(제25조). ⑥ 우주개발전략본부장은 내각총리대신이 되고(제28조), 부분부장은 내각관방장관 및 우주개발담당대신으로 한다(제29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6. 러시아

러시아연방 ‘우주활동법’(Law on Space Activity of 1993)은 우주활동을 위한 법적 규제를 제공하고 러시아연방의 사회경제, 과학, 기술과 방위문제를

를 해결하기 위한 우주과학과 산업의 잠재력의 응용을 장려하는 법률로서, 제1장 일반규정(우주활동에 관한 러시아연방법률, 우주활동의 목표와 목적, 우주활동의 원칙), 제2장 우주활동기구(국가입법 및 행정담당기관의 권한, 러시아 우주청(Russian Space Agency:RSA), 러시아연방의 국방 및 안전보장 목적의 우주활동, 러시아연방 우주계획, 우주활동의 면허, 우주기술의 증명서 교부), 제3장 우주활동의 경제적 조건(우주활동을 위한 출자 및 외국투자, 우주기금의 확보, 우주기술의 개발, 우주기술의 이용과 이전, 우주기술의 사용과 우주활동결과), 제4장 우주기반시설(우주물체의 등록, 우주기반시설의 지상 및 기타물체, 우주비행의 관제, 유인 우주물체의 우주비행사와 승무원, 우주기반시설의 지상 및 기타물체의 근무원), 제5장 우주활동의 안전성(우주활동의 안전성 확보, 우주사고에 대한 조사, 수색과 구조 및 우주사고에 대한 해결, 사고의 정의, 우주활동의 보험), 제6장 국제협력(우주활동 분야에서의 국제적 의무, 외국기구의 시민에 대한 법적 규제, 국제협력에 대한 법적 규제), 제7장 책임(공무원, 기관원 및 시민의 책임, 손해에 대한 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다.

러시아에는 상기 ‘우주활동법’이외에 우주관련 입법으로 ① 러시아연방 상업우주활동법(1997), ② 러시아연방 우주활동 인가절차의 수립을 위한 법률(1996), ③ 러시아연방 우주과학 및 산업구조의 안정을 위한 법률(1997), ④ 러시아연방 우주활동의 관리구조에 관한 법령(1992), ⑤ 러시아연방 우주산업분야의 국가정책 이행에 관한 법령(1998) 등이 있다.

V. 우주개발 관련 우리나라 국내입법의 내용 및 개선방향

1.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1) 구성 및 목적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은 1987년 12월 4일(법률 제2991호)제정 공포되어 2009년까지 여러차례 개정되어 시행해 오고 있다. 이 법은 22개 조항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위법령으로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있다. 이 법의 목적은 항공우주산업을 합리적으로 지원·육성하고 항공우주과학기술을 효율적으로 연구·개발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 하게 하는데 있다(제1조).

이 법에서 “항공우주산업”이라 함은 항공기·우주비행체·관련 소재류를 생산(제조·가공·조립·재생·개조 또는 수리하는 것을 포함하되 항공법에 의한 항공기의 정비·수리·개조 등 항공기 사용자가 그 운항상 필요로 행하는 작업을 제외)하는 사업과 항공기·우주비행체를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하는 응용사업(항공법에 의한 항공운송사업 및 항공기 사용사업을 제외)을 말한다(제2조제1호).

(2) 주요내용

1) 항공우주산업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정부는 항공우주산업의 개발을 위하여 ① 항공우주산업개발의 목표 및 방향, ② 항공우주산업개발의 추진체계 및 전략, ③ 항공우주개발산업의 추진계획, ④ 항공우주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한 종합연구체제 및 연구·개발 예산, ⑤ 항공우주산업개발에 필요한 자원 조달 및 투자계획, ⑥ 항공우주산업개발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⑦ 항공우주산업개발의 활성화를 위한 국제협력, ⑧ 그밖에 항공우주산업개발에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이 포함된 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제3조제1항). 정부는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그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제3조제2항).

2) 항공우주산업의 육성

정부는 항공우주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① 여객용 항공기·화물용 항공기 및 무인 항공기의 개발에 관한 사업, ② 기동용 회전익항공기·공격용 회전익항공기의 개발에 관한 사업, ③ 우주비행체의 개발에 관한 사업, ④ 기기류 및 소재류의 기술개발에 관한 사업, ⑤ 항공기·우주비행체·기기류 및 소재류의 성능검사와 품질검사를 위한 장비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업, ⑥ 그밖의 항공우주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등에 관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제4조제1항).

정부는 항공우주산업의 육성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제4조제3항).

3) 특정사업자의 지정 및 지원, 지정의 취소

지식경제부장관은 항공우주산업기본계획에 따라 특별히 육성할 필요가 있는 품목 등을 지정할 수 있다(제5조제1항).

지식경제부장관은 항공우주사업자 중 전항의 품목 등을 생산하거나 생산할 사업자를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생산 또는 연구·개발능력 등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특정사업자로 지정하여 이 법에 의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행할 수 있다(제5조제2항).

지식경제부장관은 특정사업자가 ①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계속하여 그 사업을 휴지한 때, ②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③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부적합하게 된 때, ④ 제6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등에 해당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제8조).

4)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

항공우주산업사업자가 항공기·우주비행체·기기류 또는 소재류의 생산을 한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수출을 목적으로 생산한 품목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따로 지정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제10조제1항).

지식 경제부장관은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에 합격한 항공기·우주비행체·기기류 또는 소재류에 대하여 검사합격증을 교부한다(제10조제4항).

5) 사용의 제한 등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한 항공기·우주비행체·기기류 또는 소재류는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시험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1조제1항).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항공기·우주비행체·기기류 또는 소재류를 시험비행 등의 용도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항공법 제15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시험비행 등을 허가하여야 한다(제11조제2항).

6) 자금의 지원, 국유시설 및 기기 등의 대여 등

정부는 항공우주산업의 육성, 항공우주과학기술의 연구·개발과 항공우주과학기술관련 전시회의 개최 및 운영을 위하여 장기 저리자금과 연구개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제12조).

정부는 항공기·우주비행체·기기류 또는 소재류의 연구·개발이나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의 시설 또는 기기 등을 항공우주산업사업자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양여 또는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제13조제1항).

7)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 설치, 기능, 구성 등

정부의 기본계획의 수립과 이에 따른 정부의 중요정책 및 각 부처 간의 주요업무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 소속으로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를 둔다(제14조).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는 ① 기본계획의 수립, ② 기본계획과 관련된 정부의 중요정책 및 각 부처 간의 주요업무의 조정, ③ 기본계획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세출예산의 수립, ④ 항공우주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등에 대한 총괄·조정, 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등을 심의한다(제15조). 항공우주산업개발 정책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제16조제1항). 심의회의 위원장은 지식경제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16조제2항).

(3)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전부 개정안

1) 개정이유

항공우주산업은 그동안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을 근거로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 졌으나, 시장·산업의 환경변화에 맞는 지원정책의 부족, 불필요한 규제 등으로 항공우주산업에 미래의 주력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지원법 역할에 한계가 있다.

이에 항공우주산업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주력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다양한 지원방식의 제시, 규제 폐지를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시장 중심의 WTO 규정 준수 등의 내용을 포함한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전부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지식경제부는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전부 개정 법률안”을 2009년 12월 23일 입법예고 하였다.³⁷⁾

2) 개정안 주요 내용³⁸⁾

① 법의 제명 '항공우주산업 육성법'으로 변경 : 산업의 개발을 촉진하는

37) 지식경제부 공고 제 2009-471호, 2009. 12. 23; <http://www.mke.go.kr>.

38) 지식경제부, 상기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전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참조.

초기단계의 지원에서 벗어나 주력산업으로의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법의 제명을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에서 “항공우주산업촉진법”으로 변경하고 있다.

- ② 항공비행시험장 등 정의규정 신설 : 항공비행시험장, 항공기정비개조산업, 탐색개발, 국제공동개발, 협동연구개발, 항공기정비개조사업자 등 정의규정을 신설하여 항공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법체계를 확립하고 있다(개정안 제2조).
- ③ 항공우주산업 기본계획 수립, 항공우주산업위원회 설치 : 항공우주산업 육성의 목표, 방향, 추진체계, 추진전략,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항공우주산업 기본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하고 그 심의를 위해 항공우주산업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개정안 제5조, 제7조).
- ④ 항공우주산업의 육성을 위한 사업 : 항공기 등의 개발 및 사업화에 관한 사업, 항공기 등의 시험·평가기술의 선진화 사업 등 항공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개정안 제10조).
- ⑤ 탐색개발, 국제공동개발 : 항공기 등의 개발을 위해 수행하는 탐색개발, 국제공동개발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개정안 제11조, 제12조).
- ⑥ 협동연구개발 : 타 산업과의 협동연구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개정안 제13조).
- ⑦ 공제사업 : 항공우주산업사업자의 사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및 영업활동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개정안 제17조).
- ⑧ 항공우주산업의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 : 항공우주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항공기 등 시험·평가 장비의 확충, 무인항공기 활용촉진에 관한 사업 등 항공우주산업의 육성 기반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개정안 제18조).

- ⑨ 항공우주산업의 집적 활성화 : 항공우주산업의 집적을 통한 상승효과를 도모하기 위하여 이와 관련된 기업, 연구소, 대학, 기업지원시설 등을 일정한 지역에 집중시키는 항공우주산업 집적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개정안 제21조).
- ⑩ 항공비행시험장의 지정 등 : 항공우주산업 분야에서 개발된 기술과 제품을 전문적으로 시험·평가할 수 있는 비행시험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성지역의 지정·실행계획의 승인, 조성·운영비의 지원, 인허가의 의제등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개정안 제22조, 제23조, 제26조, 제28조).
- ⑪ 특정사업자의 지정 및 지원제도 폐지 : 현행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제5조는 특정사업자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지식경제부장관이 기본계획에 따라 특별히 육성할 필요가 있는 품목 등을 지정할 필요가 있는 품목 등을 지정할 수 있고,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특정품목에 대한 지정과 지원제도는 항공우주산업의 특정분야에 대한 지원으로 WTO의 특정산업 지원에 정면으로 충돌하는 내용이고, 정부에서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지 않아 실효성이 없게 되었다. 또한 특정사업자의 지정 및 지원과 관련된 제6조의 결격사유, 제7조의 사업승계, 제8조의 지정취소에 관한 규정은 더 이상 존속의 의미가 없어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³⁹⁾
- ⑫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 폐지 : 현행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제10조는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항공우주산업사업자가 항공기·우주비행체·기기류 또는 소재류의 생산을 한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항공우주분야의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는 제품규제로서 항공법에 따른 항공기 등의 형식증명 및 제작증명과 이중 규제적 성격이 강하여 정부부처 간 협의에 의하여 폐지하기로 결정하였다.⁴⁰⁾

39) 이종영,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의 개선방향”, 『항공우주』 2010봄호 통권106호,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2010. 3, p.27.

2. 우주개발진흥법

(1) 구성 및 목적

1987년 제정되어 시행중인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은 주로 항공산업의 지원·육성에 역점을 두고 있는 법이므로, 우주활동(인공위성의 발사허가, 등록, 우주사고로 인한 제3자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우주책임보험 등)을 규제하고, 우주산업을 더욱 효율적으로 지원·육성할 수 있는 새로운 우주법의 입법이 필요하게 되었다.⁴⁰⁾

우주개발진흥법은 2005년 5월 31일(법률 제7538호) 제정 공포되었지만, 동법 부칙에 의거 이 법 공포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 되었으며, 2010년 3월까지 몇차례 개정되어 시행해오고 있다.

이 법은 22개 조항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위법령으로 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있다. 이법의 목적은 우주개발을 체계적으로 진흥하고 우주물체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과 과학적 탐사를 촉진하고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는데 있다.

이 법에서 “우주개발”이라 함은 ① 우주물체의 설계·제작·발사·운용 등에 관한 연구활동 및 기술개발활동 ② 우주공간의 이용·탐사 및 이를 촉진하기 위한 활동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제1호). “우주물체”라 함은 우주공간에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계·제작된 물체(우주발사체·인공위성·우주선 및 그 구성품을 포함)를 말한다(제2조제3호).

(2) 주요내용

1)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의 수립

정부는 우주개발의 진흥과 우주물체의 이용·관리 등을 위하여 ① 우주

40) 이종영, 전계 기고문, p.27.

41) 김두환, 전계 논문, p.25.

개발정책의 목표 및 방향, ② 우주개발 추진체계 및 전략, ③ 우주개발 추진 계획, ④ 우주개발에 필요한 기반 확충, ⑤ 우주개발에 필요한 소요자원 조달 및 투자계획, ⑥ 우주개발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⑦ 우주개발의 활성화를 위한 국제협력, ⑧ 우주개발사업의 진흥, ⑨ 우주물체의 이용·관리, ⑩ 위성정보 등 우주개발 결과의 활용, ⑪ 그밖에 우주개발 진흥과 우주물체의 이용·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등이 포함된 우주개발기본진흥계획을 세워야 한다(제5조제1항).

정부는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국가우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5조제2항).

2) 국가우주위원회

기본계획의 수립 등 우주개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국가우주위원회를 둔다(제6조제1항). 위원회는 ① 기본계획, ② 기본계획과 관련된 정부의 중요정책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국가정보원을 포함)의 주요업무의 조정, ③ 우주개발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중요사항, ④ 우주개발사업의 이용·관리의 평가, ⑤ 우주개발사업의 소요자원 조달 및 투자계획, ⑥ 우주발사체의 발사 허가(국가의 안전보장 등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음), ⑦ 우주개발의 시정 ⑧ 그밖에 위원장에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등을 심의한다(제6조제1항).

국가우주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제6조제5항).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은 과학기술부 장관이 되고, 위원은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제5조제4항).

3) 우주개발전문기관의 지정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우주개발사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우주개발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제7조제1항).

우주개발전문기관은 ① 기본계획에 따른 우주개발사업의 수행, ② 우주

물체의 개발·발사 및 그 운용 등 통합 수행, ③ 그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우주개발사업 관련업무 등을 수행한다(제7조제2항).

4) 우주물체의 국내등록, 국제등록

대한민국 국민(법인을 포함)이 국내·외에서 우주물체(우주발사체를 제외)를 발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사에정일로부터 180일 전까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예비등록을 하여야 한다(제8조제1항).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발사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제8조제4항).

우주물체를 예비등록한 자는 그 우주물체가 위성궤도에 진입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우주물체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외기권에 발사된 물체의 등록에 관한 협약”에 따라 발사국 정부와 합의하여 외국에 등록된 우주물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제8조제5항).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우주물체의 등록이 있을 때에는 “외기권에 발사된 물체의 등록에 관한 협약”에 따라 외교통상부장관을 경유하여 국제연합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전파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제연합에 등록하는 인공위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9조제1항).

5)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취소 및 청문

우주발사체를 발사하고자 하는 자가 ① 대한민국의 영역 또는 대한민국의 관할권이 미치는 지역·구조물에서 발사하고자 하는 경우, ② 대한민국 정부 또는 국민이 소유하고 있는 우주발사체를 국외에서 발사하고자 하는 경우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11조제1항).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발사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① 우주발사체 사용목

적의 적정성, ② 발사에 사용되는 우주발사체 등에 대한 안전관리의 적정성, ③ 우주사고의 발생에 대비한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가입 등 재정부담능력, ④ 그밖에 우주발사체의 이동 등 발사 및 발사준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사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제11조제3항).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①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된 발사에정일부터 1년 이상 발사를 지체한 경우, ② 거짓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사허가를 받은 경우,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에 심각한 위협이 예상되어 허가취소를 요청한 경우, ④ 우주발사체의 발사전 연료누수, 통신시스템의 결함 등 우주발사체의 안전관리에 이상이 있는 경우, ⑤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⑥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를 받은 자가 제12조 각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주발사체 발사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제13조제1항).

6) 우주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가입, 우주사고조사위원회 회의 구성 등

우주물체를 발사한 자는 그 우주물체로 인한 우주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와 책임한계 등에 관하여도 따로 법률로 정한다(제14조).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우주사고의 발생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제15조제1항). 전항의 규정에 따라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의 최소배상 한도액은 국내·외 보험시장을 고려하여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제15조제2항).

과학기술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주사고를 조사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하에 우주사고조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제16조제1항). 우주사고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내지 11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관련 전문가 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의 안

전보장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주사고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제16조제2항).

7) 위성정보의 활용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개발된 인공위성에 의하여 획득한 위성정보의 보급·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담기구의 지정·설립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담기구의 지정·설립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제17조제1항).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성정보의 보급·활용 촉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제17조제2항).

정부는 위성정보의 활용에 있어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17조제3항).

8) 민간 우주개발사업의 지원, 우주개발의 중지 및 시정, 지원 및 협조요청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민간부문의 우주개발사업을 활성화하고 연구개발투자의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우수 우주개발인력의 공급, 세제·재정상의 지원 및 우선구매 등의 지원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제18조제1항).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시책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제18조제2항).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국방부장관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하에서 군 작전수행을 위하여 대한민국 국민이 수행하는 우주개발에 대하여 중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그 국민에게 우주개발의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제19조제1항).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공질서 유지 또는 국가의 안전보장을 이유로 대한민국 국민이 수행하는 우주개발에 대하여 시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국민에게 우주개발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제19조제2항).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우주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① 국내

우주물체 발사에 따른 주변지역(영해 및 영공 포함)의 출입통제에 관련한 사항, ② 통신, 화재진압, 긴급구난·구조 및 안전관리 등과 관련한 사항 등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제20조제1항).

9) 우주비행사의 구조, 우주물체의 반환

정부는 외국의 우주물체에 탑승한 우주비행사가 대한민국 영역이나 근접한 공해상에 비상착륙·조난 또는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가능한 원조를 제공하여야 하며, 우주비행사를 해당우주물체의 발사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발사국·등록국 또는 국제기구에 귀환시켜야 한다(제22조).

정부는 외국의 우주물체가 대한민국의 영역에 추락하거나 비상착륙한 경우에는 이를 안전하게 해당우주물체의 발사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발사국·등록국 또는 국제기구에 반환한다(제23조).

10) 우주개발 등에 관한 자료수집 및 실태조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우주개발을 체계적으로 진흥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우주개발 및 우주분야 산업에 관한 자료수집 또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제24조제1항).

(3) 우주개발진흥법의 개선방향

1) 우주개발진흥법과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과의 법체계상 중복문제

현행 우주개발진흥법은 우주기술의 연구·개발의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은 항공우주기술의 산업화가 가능한 분야에 대한 육성·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어, 양 법률의 차이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주개발진흥법과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이 각각 우주분야와 항공분야로 그 적용대상을 구분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우주기술과 항공기술이 밀접하게 관련되고, 그와 같은 밀접한 상관성을 적극 반영한 국가정책이 수립되어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

후 우주개발진흥법과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의 중복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양 법률의 내용 중에서 우주개발과 관련하여 중복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부분에 관한 법체계상의 조화를 이루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주개발 및 관련산업과 항공산업에 대한 소관부처의 확정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는 바 전자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소관으로 하고, 후자는 지식경제부 소관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주개발 및 관련산업의 최고 심의기관을 우주개발진흥법 제6조에 의거 국가우주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하되, 지식경제부가 그 심의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⁴²⁾

2) 국가우주위원회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간에 우주개발에 관한 국가연구개발 예산의 배분·조정문제

우주개발진흥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 소속하에 국가우주위원회를 두며, 동 위원회는 우주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이와 관련된 정부의 중요정책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주요업무의 조정, 우주개발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중요사항, 우주개발사업의 이용·관리의 평가, 우주개발사업의 소요재원 조달 및 투자계획, 우주발사체의 발사 허가, 우주개발의 시정 등 우주개발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2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매년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R&D) 예산의 배분방향과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있다.

여기서 국가우주위원회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간에 우주개발에 관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 및 운영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즉 우주개발에 관한 사항이 국가우주위원회의 심의사항이라 할지라도 우주개발에 관

42) 이영진·김두환·조홍제, “우주법 논의동향과 한국의 정책방향 연구”, 외교통상부 용역과제, 2008. 9. 30. pp.173-174.

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예산 배분 운영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인지, 아니면 국가우주위원회로 이관되어야 할 것인지에 관하여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⁴³⁾

3) 우주개발에 있어서 환경의 배려 및 보전

일본 우주기본법에 의하면, 우주개발이용은 우주개발이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배려하여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⁴⁴⁾ 또한 국가는 환경과의 조화를 배려하여 우주개발이용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국가는 우주의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국제적인 제휴를 확보하는데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⁴⁵⁾

우리나라 현행 우주개발진흥법에는 일본 우주기본법상의 위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바, 우주개발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함을 고려해 볼 때, 우주개발에 있어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배려할 것, 환경과의 조화를 배려한 국가시책을 강구할 것 그리고 환경보전을 위한 국제적 제휴에 국가가 노력할 것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4) 우주개발에 관한 시책 및 규제를 위한 법제상 조치 강구 및 법제의 정비

일본 우주기본법에 의하면, 정부는 우주개발이용에 관한 시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제상, 재정상, 세제상 또는 금융상 조치 기타 조치를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⁴⁶⁾ 또한 정부는 우주활동에 관계되는 규제 기타의 우주개발에 관한 조약 기타의 규제약속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한 법제의 정비를 종합적·계획적으로 신속하게 실시하여야 하며, 이러한 법제의 정부는 국제사회에 있어서 자국의 이익의 증진 및 민간에 있어서 우주개발이용의 추진에 이바지하도록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⁴⁷⁾

43) 이영진 외 2인, 진게 보고서, p.175.

44) 일본 우주기본법 제7조.

45) 일본 우주기본법 제20조.

46) 일본 우주기본법 제11조.

47) 일본 우주기본법 제35조.

우리나라 현행 우주개발진흥법에는 일본 우주기본법상의 위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바, 우주개발에 관한 정부시책 및 우주개발에 관한 규제와 조약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법제상, 재정상, 세제상 또는 금융상 조치 등을 정부가 강구할 것과 법제의 종합적·계획적 정비를 정부가 신속히 실시할 것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3. 우주손해배상법

(1) 구성 및 목적

우주손해배상법은 2007년 12월 21일(법률 제8714호) 제정 공포되었지만 통법 부칙에 의거 이 법 공포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은 8개 조항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위법령으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제정되어 있지 않다. 이 법의 목적은 우주손해가 발생한 경우의 손해배상 범위와 책임한계 등을 정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우주개발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이 법에서 “우주물체 발사”란 우주개발진흥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우주물체를 발사하는 것을 말하며, 발사준비·시험발사 및 성공하지 못한 발사를 포함한다(제2조3호). “우주손해”란 우주물체의 발사·운용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제3자의 사망·부상 및 건강의 손상과 같은 인적 손해와 재산의 파괴·훼손·망실과 같은 물적 손해를 말한다(제2조제4호).

(2) 주요내용

1) 국제협약과의 관계 등

정부는 “우주물체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국제책임에 관한 협약”에 따라 정부가 외국정부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한 경우에는 우주물체 발사자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제3조제1항).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또는 대한민국 정부가 입은 우주손해의 배상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의 개인·법인·단체 또는 정부에 대하여는 그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제3조제2항).

2) 무과실 책임 및 책임의 집중 등

우주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우주물체 발사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국가간의 무력충돌, 적대행위, 내란 또는 반란으로 인한 우주손해와 우주공간에서 발생한 우주손해의 경우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제4조제1항).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생긴 우주손해를 전항에 따라 배상한 우주물체 발사자는 그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다만, 그 손해가 우주물체 발사 등에 제공될 자재의 공급이나 역무(노무를 포함)의 제공에 의하여 생긴 때에는 해당 자재의 공급이나 역무를 제공한 자나 그 종업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 한하여 구상할 수 있다(제4조제2항). 우주손해에 대하여는 제조물책임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4조제3항).

3) 손해배상책임 한도액

우주물체 발사자가 배상하여야 하는 책임한도는 2천억원으로 한다(제5조).

4)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가입

우주개발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손해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제6조제1항).

전항에 따라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금액은 제5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 우주물체의 특성, 기술의 난이도, 발사장 주변 여건 및 국내외 보험시장 등을 고려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제6조제2항).

5) 정부의 조치

정부는 우주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피해자의 구조 및 피해의 확대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제7조제1항). 정부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우주물체 발사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이 제6조제2항의 보험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우주물체 발사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제7조제2항). 정부가 전항의 지원을 할 때에는 국회의 의결에 의하여 허용된 범위 안에서 한다(제7조제3항).

6) 권리행사의 기간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제4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제8조제1항).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우주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행사하지 못한다(제8조제2항).

(3) 우주손해배상법의 개선방향

1) 우주손해의 정의와 간접 손해

우주손해배상법 제2조제4호에서 “우주손해”의 정의를 우주물체의 발사·운용 등으로 발생된 제3자의 사망·부상 및 건강의 손상과 같은 인적 손해와 재산의 파괴·훼손·망실과 같은 물적손해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우주손해를 인적 손해와 물적 손해로 구분하고 있는 바, 이는 배상의 대상이 되는 손해의 범위를 모두 직접 손해만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주물체의 발사·운용 등으로 발생된 손해의 배상범위를 직접 손해에 한정하는 것은 피해자의 구제에 충실하기 위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간접 손해까지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최근의 추세와 부합되지 않고, 간접 손해도 가해자의 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공평한 손해의 분담이라는 불

법행위법의 기본 정신에 비추어 배상의 범위에 간접 손해를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⁴⁸⁾

2) 손해배상책임 한도액의 통화단위

우주손해배상법 제5조에는 우주물체 발사자가 배상하여야 하는 책임한도를 2천억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우리나라 상법⁴⁹⁾ 및 1999년 몬트리올협약⁵⁰⁾에서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의 통화단위인 ‘특별인출권’(Special Drawing Right)을 계산단위로 도입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우주손해배상법의 책임한도액 통화단위인 ‘원’을 ‘계산단위’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⁵¹⁾

3) 우주물체 공동 발사자의 연대책임 및 구상권

우주손해책임조약에는 2개 이상 국가가 공동으로 우주물체를 발사하는 경우에 손해에 대한 연대책임 및 구상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⁵²⁾, 우리나라 우주손해배상법에는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2인 이상의 개인 또는 법인이 공동으로 우주발사체를 발사한 경우, 이들 개인 또는 법인 등이 우주물체의 발사·운용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하되,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행하는 개인 또는 법인은 공동 발사에 참가한 다른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지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⁵³⁾

다만, 우주손해책임조약에서 간접 손해를 언급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우리나라 우주손해배상법에서 간접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을 허용할 경우 간접 손해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우주손해책임조약 당사국인 외국의 피해자에 대하여도 적용되므로 상호주의의 원칙에 반하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

48) 한국항공우주법학회, 전계 보고서, p.203; 김선이, 전계 논문, p.6.

49) 상법 제770조, 제797조.

50) 1999년 몬트리올협약 제21조-제23조.

51) 이영진 외 2인, 전계 보고서, p.179.

52) 우주손해책임조약 제5조.

53) 이영진 외 2인, 전계 보고서, p.180.

을 것이다.⁵⁴⁾

4) 우주손해배상심의위원회의 설치

우주손해배상법상 우주손해가 발생한 경우 우주물체 발사자와 피해자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주손해배상심의위원회와 같은 분쟁조정기관의 설치·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⁵⁵⁾

4. 상업우주운송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개발 및 법령 정비

(1) 상업우주운송산업의 성장과 전망

상업우주운송산업이란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유상으로 사람 및 물자를 지상과 우주 간에 운송하거나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상업우주운송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우주운송체의 개념 및 우주자원의 활용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기존의 우주개발사업에서 우주운송에 해당하는 부분은 주로 국가 주도에 의해 개발되어져 왔으나, 점차 상업우주운송의 형태로 전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미국항공우주국(NASA)의 Space Shuttle 프로그램이 상업우주운송 기업으로 이양됨으로서 이러한 추세는 가속화 될 것이며, 영국 Virgin Galactic 사에서 추진중인 민간인 대상의 우주여행 프로그램은 상업우주운송산업의 성장세에 기폭제가 될 것이다.

1980년 이후 주요 우주 선진국들은 우주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우주운송 부문의 상업화를 추진하였다. 인공위성 발사와 관련한 우주운송의 경우 대부분 상업화되어 연간 3조원 규모의 시장이 형성되었고, 2004년에 세계 최초로 민간 유인운송체 Space Ship One 이 발사에 성공하여 우주운송산업이 유인 우주선 부문까지 확대되었다.⁵⁶⁾

54) 문준조·김선이, 전계서, p.352.

55) 이영진 외 2인 전계 보고서, p.180; 김선이, 전계 논문, p.22.

56) 미국 벤처기업 Scaled Composites 사는 2004년 6월에 우주선 Space Ship One을 준케

앞으로 우주산업은 우주여행, 우주공항, 우주호텔, 우주를 통한 사람 및 물자의 운송 등 새로운 형태의 우주산업이 지속적으로 등장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관련 시장규모는 연간 수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에서도 2013년에 우주여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예천천문 우주센터는 우주여행의 실현을 위하여 미국의 민간 유인우주선 제작사인 XCOR 에어로스페이스와 Lynx MKII 우주선 도입을 위한 구속력있는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⁵⁷⁾ 2013년에 도입하여 운항할 계획이다. 이 우주선은 2인승으로 조종사 1명과 승객 1명이 탑승 가능하며, 우주여행 이용료는 1억 원대로 예상된다.⁵⁸⁾

(2) 상업우주운송산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 개발 및 법령 정비

위와 같은 상업우주운송산업의 발달에 대비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신개념 우주운송체⁵⁹⁾와 우주공항의 설계 및 운용허가와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사업의 다변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우주운송산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국가의 우주개발 경쟁력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⁶⁰⁾

2009년 8월 우리나라 최초의 소형위성발사체 나로호의 발사를 계기로 우리나라도 우주운송체 보유국으로 진입이 멀지 않고 있으며, 우주여행 관련 기업들을 비롯한 여러 상업우주운송 기업체들의 국내진출이 예상된다. 따라서 상업우주운송에 대한 안전인증 및 관리감독 체계의 마련이 시급하며,

도로 불리우는 고도 100Km에 도달시켜, 민간 최초의 유인 우주비행에 성공하고, 이어 9월 및 10월 두 차례, 2주 이내의 연속비 행에도 성공하여 3인승 로켓으로 고도 100Km까지 무중력 관광을 최초로 달성한 기업 등에 수여되는 국제 콘테스트의 XPrize를 획득하였다(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세계의 항공우주산업」, 2009, p.110).

57) 로켓 개발 벤처기업 XCOR 에어로스페이스사는 우주 여객기의 시험비행 면허를 미 연방 항공국으로부터 2004년에 취득하고 우주선 Lynx를 개발중이며, Lynx는 2인승이며 1일에 4회의 비행이 가능하다(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전제서, p.110).

58) 한재현·윤자영, “나로호 2차 발사에 즈음한 우주교통산업 전망” 「월간교통」 통권 제 147호, 한국교통연구원, 2010. 5, p.47.

59) 신개념 우주운송체는 기존의 수직발사·재사용 불가능 형태가 아닌 수평발사·재사용 가능형태의 우주운송체를 말한다.

60) 한재현·윤자영, 전제 기고문, p.47.

더 나아가 국가경제 신 성장동력으로서 국내의 상업우주운송산업의 육성에 관한 정책개발이 필요하다.

새로운 항공우주비행기(areospace plane)는 어떠한 법적 규제를 받게 된 것인가라는 문제가 제기되는 바, 항공우주비행기는 그의 디자인과 목적을 살펴보면 항공법과 우주법이 모두 적용될 것이며, 두 개 영역사이의 경계에 관한 어려운 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진다.⁶¹⁾

우리나라 항공법 제2조제1호에서 “항공기란 비행기, 비행선, 활공기, 회전익항공기,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항공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9조제2호에서 “지구 대기권 내외를 비행할 수 있는 항공우주선”을 항공기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항공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⁶²⁾

우리나라 우주운송산업의 육성을 위하여는 현행 항공법 및 우주개발 관련 법령의 적절한 보완 정비가 필요하다.

미국의 우주운송과 관련된 법률로는 1998년의 우주운송서비스구매법(Space Transportation Service Purchase Act of 1998), 1999년의 상업우주운송경쟁법(Commercial Space Transportation Competitiveness Act of 1999), 1999년의 상업우주운송비용절감법(Commercial Space Transportation Cost Reduction Act of 1999) 등이 있다. 이러한 법률은 우주물체 운송 서비스, 자국 및 해외의 우주운송 수요의 급증에 따르는 시장대응의 일환으로 정비를 시작하였으며, 또한 정부와 민간 주체 간에 우주물체 운송 서비스의 범위, 면허발급, 책임, 배상범위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⁶³⁾

61) I.H.Ph.Diederiks-Verschoor, and V.Kopal, *op.cit.* p.85.

62) 문준조·김선이, 전계서, p.250.

63) 공군법무실, 전계서, 2008, p.51.

VI. 결 론

우리나라는 2009년 6월 전남 고흥군 외나로도에 우주센터가 준공되었고, 동년 8월 우리나라 최초의 소형 우주발사체 나로호(KSLV-1)를 발사함으로써 본격적인 우주개발시대에 접어 들게 되었다. 러시아의 기술협력을 받아 개발한 나로호 1차 발사는 비록 궤도 진입에 실패하였으나 발사체 개발과 발사 기술에 있어 상당한 진보를 이루어 냈다.

우리나라 우주개발 중장기 계획에 의하면, 2010년에 통신해양기상위성 발사, 우주발사체 나로호 2차 발사, 다목적 실용위성 5호 발사, 2011년에 다목적 실용위성 3호 발사, 2015년에 우주산업 세계 10위권 진입, 2018년에 한국형 우주발사체(KSLV-2) 개발, 2020년에 달 궤도선 발사, 2025년에 달 착륙선을 발사할 계획이다.

우주개발 선진국들은 이미 오래전에 위성과 로켓 개발을 모두 성공적으로 마치고, 지금은 우주관광과 같은 우주활동이나 우주탐사 등에 까지 활동범위를 넓히고 있다.

우리나라의 우주산업 강국 달성을 위해서는 우주개발과 우주산업의 연계가 중요하며, 특히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우주산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기 위하여 관련 정부부처, 국책연구기관 및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참여하여 국내 우주산업을 위한 로드맵(road map)을 수립하여야 한다. 우주산업을 활성화함으로써 국가의 우주개발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우주활동과 관련되는 규제와 그 외의 우주개발에 관한 국제조약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이익 증진, 민간영역에서의 우주개발의 추진 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각국은 우주개발에 관한 국내입법을 제정 시행해 오고 있다.

현행 우리나라의 우주개발 관련 국내입법으로는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우주개발진흥법 및 우주손해배상법 등이 제정 시행되고 있는 바, 향후 우주개발사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이러한 우주개발 관련 법률

들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개선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현행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은 국내의 어떠한 분야별 다른 산업육성법보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다른 산업분야와 비교할 때 어느 정도 법률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에, 항공우주산업의 발전에 실질적인 정책이 반영되어 있지 못하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2009년 12월 지식경제부가 입법 예고한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전부개정안의 주요내용 가운데 ① 법의 제명을 “항공우주산업육성법”으로 변경, ② 항공우주산업기본계획 수립, 항공우주산업위원회 설치, ③ 항공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 ④ 탐색개발, 국제공동개발, 협동연구개발, ⑤ 공제사업, 항공우주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 ⑥ 항공우주산업의 집적화, ⑦ 항공비행시험장의 지정 등, ⑧ 특정사업자의 지정 및 지원제도 폐지,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 폐지 등에 관하여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현행 우주개발진흥법의 개선방향으로는, ①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과의 법체계상의 중복 문제, ② 국가우주위원회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간에 우주개발에 관한 국가연구개발 예산의 배분, 조정 문제, ③ 우주개발에 있어서 환경의 배려 및 보전, ④ 우주개발에 관한 시책 및 규제를 위한 법제상 조치 강구 및 법제의 정비 등에 관하여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현행 우주손해배상법의 개선방향으로는, ① 우주손해의 정의와 간접손해, ② 손해배상책임 한도액의 통화단위, ③ 우주물체 공동발사자의 연대책임 및 구상권, ④ 우주손해배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하여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우주여행 등 상업우주운송산업의 발달에 대비하여 상업우주운송산업의 육성에 관한 정책의 개발과 아울러 현행 항공법 및 우주개발 관련 법령의 정비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러한 법령의 정비는 미국의 우주운송서비스구매법, 상업우주운송경쟁법, 상업우주

운송비용절감법 등의 내용을 참조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주개발과 우주산업은 현시점에서 우리나라의 차세대의 국가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업으로서 앞으로 10년 안에 우리나라의 우주개발과 우주산업의 국제적인 위상이 결정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우주개발과 우주산업이 후발주자로 전락하지 않고 선두주자로서 선진국과 경쟁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새로운 도약을 하기 위하여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등 우주개발 관련 국내입법의 조속하고 적절한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공군법무실, 「우주법 해설서」, 2008. 10.
- 김두환, “세계 각국의 우주관계 입법례와 우리나라 우주개발진흥법의 주요내용 및 앞으로의 과제”, 「항공우주법학회지」 제20권 제1호, 한국항공우주법학회, 2005. 6.
- _____, “우리나라 및 일본의 우주법 관련 현황과 개선방향”, 「제41회 한국항공우주법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한국항공우주법학회, 2008. 11. 14.
- 김선이, “우주손해배상법에 관한 약간의 고찰”, 「항공우주법학회지」 제22권 제2호, 한국항공우주법학회, 2007. 12.
- 김한택, “달조약의 의미와 전망에 관한 연구”, 「항공우주법학회지」 제21권 제1호, 한국항공우주법학회, 2009. 6.
- 문준조·김선이, 「현대 우주법론」, 한국법제연구원, 2009.
- 박원화, 「우주법」, 명지출판사, 2009.
- 신성환, “KSLV 발사에 따른 제작 및 제3자 피해 책임에 대한 우주법적 소고”, 「항공우주법학회지」 제21권 제1호, 한국항공우주법학회, 2006. 6.
- 신홍균, “방송용 위성궤도에 대한 국제규범의 국내이행에 관한 연구”, 「항공우주법학회지」 제21권 제1호, 한국항공우주법학회, 2006. 6.
- 이영진·김두환·조홍제, “우주법 논의동향과 한국의 정책방향 연구”, 외교통상부 용역과제, 2008. 9. 30.
- 이종영,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의 개선방향”, 「항공우주」 2010 봄호 No.106,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2010.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2008년 우주산업 실태조사」, 2008. 12.
-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세계의 항공우주산업」, 2009.
- 한국항공우주법학회, “항공운송 및 우주개발 관련 국제조약 및 외국 입법례 분석과 우리나라 법제의 개선과제”, 2007년도 법무부 연구

- 용역 과제보고서, 2007. 10.
- 홍순길·신홍균·김종복, 「신국제항공우주법」, 한국항공대학교 출판부, 2006.
- 李康斌, “宇宙産業の 危険管理と宇宙保険”, 「紀要」 第2卷 第2号, 中央學院大學社會システム 研究所, 2002. 2.
- 龍澤邦彦, 「宇宙法システム」, 中央學院大學地方自治研究センター, 2000.
- 栗林忠男, 「解説 宇宙法資料集」, 慶應通信, 1995.
- Cheng, Bin, *Studies in International Space Law*, Clarendon Press Oxford, 1997.
- Diederiks-Verschoor, I. H. Ph. and Kopal, V., *An Introduction to Space Law*, Kluwer Law International, 2001.
- Doo Hwan Kim, *Essays for the Study of the International Air and Space Law*, Korea Studies Information Co., Ltd., 2008.
- Goh, Gerardine Meishan, *Dispute Settlement in International Space Law*, Martius Nijhoff Publishers, 2007.
- Haanapel, P.P.C., *The Law and Policy of Air Space and Outer Space-A Comparative Approach*, Kluwer Law International, 2003.
- Jasentuliyana, Nandasiri, *International Space Law and the United Nations*, Kluwer Law International, 2000.
- International Bureau of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Arbitration in Air, Space and Telecommunications Law*, Kluwer Law International, 2002.
- Lyall, Francis and Lasen, Paul. B., *Space Law A Treatise*, Ashgate Publishing Limited, 2009.
- Viikari, Lotta, *The Environmental Element in Space Law*, Martinus Nijhoff Publishers, 2008.
- Willis Korea Ltd., *Introduction to Space Risks and Satellite Insurance Market & Space Insurance Market Overview*, 2005. 5.

Won Hwa Park, "Outer Space Activities and Observation of Related Laws of Korea", *Korean Journal of Air and Space Law*, Vol.24 No.2, Korean Association of Air and Space Law, December 2009.

<http://www.kari.re.kr>

<http://www.unoosa.org>

<http://www.jaxa.jp>

<http://www.nasa.gov>

초 록

우리나라는 1992년 최초의 인공위성 우리별 1호를 발사한 이후, 현재 까지 11기의 인공위성을 발사하였다. 2007년 국가우주위원회에서 우주개발중장기 기본계획을 수정 보완한 우주개발진흥계획을 수립하였다. 동 계획에 의하면, 2010년 까지 총 13기의 인공위성 개발, 2020년경까지 한국형 우주발사체 개발, 2021년 달 탐사선 발사 등이 예정되어 있다. 한편 2009년 6월 전남 고흥군 외나로도에 우주센터가 준공되어 동년 8월 우리나라 최초의 소형 우주발사체 나로호 KSLV-1가 1차 발사되었으며, 2010년 6월 나로호가 2차 발사되었다.

유엔에서 채택되어 발효 중인 우주개발 관련 국제조약으로는 1967년 우주조약, 1968년 우주구조만환협정, 1971년 우주손해책임조약, 1972년 우주물체등록조약, 1979년 달 조약 등 5가지 조약이 있으며, 우리나라는 달 조약을 제외한 4가지 조약을 가입 비준하였다.

세계 주요국의 우주개발 관련 국내입법례로는, 미국의 1958년 국가항공우주법 및 1998년 상업우주법, 영국의 1986년 우주법, 프랑스의 1961년 국립우주센터 설립법, 캐나다의 1990년 우주청법, 일본의 2008년 우주기본법, 러시아의 1993년 우주활동법 등이 제정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우주개발 관련 국내입법으로는, 1987년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2005년 우주개발진흥법, 2008년 우주손해배상법 등이 제정 시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국내입법의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다.

지식경제부는 2009년 12월 23일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전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는 바,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① 법의 제명 “항공우주산업육성법”으로 변경, ② 항공비행시험장 등 정의규정 신설, ③ 항공우주산업 기본계획 수립, 항공우주산업위원회 설치, ④ 항공우주산업의 육성을 위한 사업, ⑤ 탐색개발, 국제공동개발, ⑥ 협동개발, ⑦ 공제사업, ⑧ 우주산업의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 ⑨ 항공우주산업의 집적 활성화, ⑩ 항공비행시험장의 지정 등, ⑪ 특정사업자의 지정 및 지원제도

폐지, ⑫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 폐지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우주개발진흥법의 개정방향으로는 ① 우주개발진흥법과 항공우주산업 개발촉진법과의 법체계상의 중복문제, ② 국가우주위원회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간에 우주개발에 관한 국가연구개발 예산의 배분, 조정문제, ③ 우주개발에 있어서 환경의 배려 및 보전, ④ 우주개발에 관한 시책 및 규제를 위한 법제상 조치 강구 및 법제의 정비 등의 사항에 관하여 수정 보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우주손해배상법의 개정방향으로는 ① 우주손해의 정의와 간접손해, ② 손해배상책임 한도액의 통화단위, ③ 우주물체 공동발사자의 연대책임 및 구상권, ④ 우주손해배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의 사항에 관하여 수정 보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2013년에 우주여행의 실현을 위하여 미국의 민간 유인 우주선 제작사인 XCOR 에어로스페이스사로 부터 우주선을 도입하여 운항할 계획이다. 앞으로 우주여행 관련기업들을 비롯한 상업우주운송 기업체들의 국내진출이 예상되므로 상업우주운송에 대한 안전인증 및 관리감독 체계의 마련이 시급하며, 국내 상업우주운송산업의 육성에 관한 정책 개발과 현행 항공법 및 우주개발 관련 법령의 적절한 보완 정비가 필요하다.

주제어 : 우주물체, 우주활동, 우주개발, 우주조약, 우주법률, 국내입법, 항공우주산업, 우주손해, 국제책임, 상업우주운송산업

Abstract

A Study on Improvement on National Legislation for Sustainable Progress of Space Development Project*

Lee, Kang-Bi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search on the contents and improvement of national legislations relating to space development in Korea to make the sustainable progress of space development project in Korea.

Korea has launched its first satellite KITST-1 in 1992. The National Space Committee has established “The Space Development Promotion Basic Plan” in 2007. The plan addressed the development of total 13 satellites by 2010 and the space launch vehicle by 2020, and the launch of moon exploration spaceship by 2021.

Korea has built the space center at Oinarodo, Goheng Province in June 2009. In Korea the first small launch vehicle KSLV-1 was launched at the Naro Space Center in August 2009, and its second launch was made in June 2010.

The United Nations has adopted five treaties relating to the development of outer space as follows : The Outer Space Treaty of 1967, the Rescue and Return Agreement of 1968, the Liability Convention of 1972, the Registration Convention of 1974, and the Moon Treaty of 1979. All five treaties has come into force.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 (KRF-2009-327-B00767).

** Professor, 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 Sangji University

Korea has ratified the Outer Space Treaty, the Rescue and Return Agreement, the Liability Convention and the Registration Convention excepting the Moon Treaty.

Most of development countries have enacted the national legislation relating to the development of our space as follows : The National Aeronautic and Space Act of 1958 and the Commercial Space Act of 1998 in the United States, Outer Space Act of 1986 in England, Establishment Act of National Space Center of 1961 in France, Canadian Space Agency Act of 1990 in Canada, Space Basic Act of 2008 in Japan, and Law on Space Activity of 1993 in Russia.

There are currently three national legislations relating to space development in Korea as follows : Aerospace Industry Development Promotion Act of 1987, Outer Space Development Promotion Act of 2005, Outer Space Damage Compensation Act of 2008.

The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of Korea has announced the Full Amendment Draft of Aerospace Industry Development Promotion Act in December 2009, and it's main contents are as follows : ① Changing the title of Act into Aerospace Industry Promotion Act, ② Newly regulating the definition of air flight test place, etc., ③ Establishment of aerospace industry basic plan, establishment of aerospace industry committee, ④ Project for promoting aerospace industry, ⑤ Exploration development, international joint development, ⑥ Cooperative research development, ⑦ Mutual benefit project, ⑧ Project for furthering basis of aerospace industry, ⑨ Activating cluster of aerospace industry, ⑩ Designation of air flight test place, etc., ⑪ Abolishing the designation and assistance of specific enterprise, ⑫ Abolishing the inspection of performance and quality.

The Outer Space Development Promotion Act should be revised with

regard to the following matters : ① Overlapping problem in legal system between the Outer Space Development Promotion Act and the Aerospace industry Development promotion Act, ② Distribution and adjustment problem of the national research development budget for space development between National Space Committee and National Science Technology Committee, ③ Consideration and preservation of environment in space development, ④ Taking the legal action and maintaining the legal system for policy and regulation relating to space development.

The Outer Space Damage Compensation Act should be revised with regard to the following matters : ① Definition of space damage and indirect damage, ② Currency unit of limit of compensation liability, ③ Joint liability and compensation claim right of launching person of space object, ④ Establishment of Space Damage Compensation Council.

In Korea, it will be possible to make a space tourism in 2013, and it is planned to introduce and operate a manned spaceship in 2013.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the policy relating to the promotion of commercial space transportation industry. Also it is necessary to make the proper maintenance of the current Aviation Law and space development-related laws and regulations for the promotion of space transportation industry in Korea.

Key Words : Space object, Space activity, Space development, Space convention, Space law, National legislation, Aerospace industry, Space damage, International liability, Commercial space transportation industry